

석유산업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



변 중 립

〈통상산업부 석유수급과 사무관〉

어 느덧 乙亥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치·사회적으로 대형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들도 있었고 충격적인 사건들로 우리의 마음을 허탈하게 한 금년이기도 하지만 수출 천억불 달성과 같이 가슴 뿌듯한 일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올해를 결산해 볼때 어느해나 마찬가지겠지만 변화와 격동의 일년이었으며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람된 일들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또 다른 한해를 맞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

우리 석유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금년 한해동안 정부가 한 일중 무엇보다 큰 특징은 대내적으로 석유산업 자유화의 시동을 걸기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과 대외적으로는 '91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산유국 외교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외에도 많은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있었으나 석유산업에 관계하고 계신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는 금년에 추진되었던 몇가지 중요한 정책적 사항들을 간추려 살펴 보면서 앞으로 석유시장 전망 및 정부시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석유산업자유화를 위한 석유사업법의 전면 개정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지난해 12월 대강의 골격이 처음 발표되었으며 금년에 들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이러한 내용을 현행 석유사업법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윤곽이 드러난 석유산업자유화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LPG에 대하여 가격자유화를 실시하고(LPG는 유가자유화후 1~2년 후 시행검토)현행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정제업과 석유판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며 석유수출입업도 석유정제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되, 등록제 운영시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저장시설을 보유토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석유정제업과 주유소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석유가격의 자유화, 석유수출입의 자유화, 석유유통업의 신규진입자유화는 '97.1.1부터 실시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충격이 큰 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자유화와 국내기업의 대비시간이 필요한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은 '99.1.1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석유산업자유화를 내용으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금년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에 개정되는 석유사업법은 초기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터 최종 문구정리 작업에 이르기까지 안철식 서기관을 비롯한 자원정책 제2심의관실 모든 직원이 기울인 땀과 노고가 있었음을 이 기회를 빌어

밝혀 두고자 한다.

산유국 외교활동의 전개

'95.8.31~9.10까지 11일간 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8명과 민간측 8명으로 구성된 순방팀이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 바레인등 6개국을 대상으로 자원의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중동지역의 순방외교는 '91.5월 이후 중단되었던 각료급 산유국 방문 외교활동으로서 중동산유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건설공사 수주, 플랜트 및 상품수출확대등 산유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대상국과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LPG 가격 결정방식 재검토 용의표시 및 원유도입시 직거래물량확대등 산유국과의 주요 현안사항 타결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외교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석유·가스의 안정적 교역기반을 다지기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방문국간의 합의 또는 제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협력·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중동지역의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고 수입선다변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유소 거리제한의 폐지

주유소 거리제한은 '84.6월에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이후 '89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지난 11.15 도지역에 설정되어 있던 주유소 거리기준이 철폐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유소간 거리제한은 폐지되게 되었다.

주유소 거리제한의 폐지는 석유산업자유화 시책의 일환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주유소 업계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그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주유소 수가 증가하여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다소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에 따라 당분간 전국적으로 주유소 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추세는 시장조정 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유소 시장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의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의 보완, 주유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강구, 석유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무분별한 주유소 신설행위의 자제등 정부, 시·도 업계의 공동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휘발유 규격이원화의 실시

금년 11.1부터 휘발유 품질규격을 옥탄가에 따라 1호(91이상 96미만)와 2호(96이상)의 2종류로 구분하고 2호의 고급휘발유는 용도가 한정되고 수요가 크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유화 하였다. 다만, 고급휘발유의 수요관리와 자원의 적정배분등을 위해 고급휘발유에 대해서 1당 90원의 판매부과금을 부과하고 고급휘발유의 가격자유화에 따른 시행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격결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급휘발유에 대한 정부권고 가격을 제시하였다.

휘발유 규격의 이원화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정유사간에 다소의 갈등도 노출되었으나 앞으로 석유가격의 전반적인 자유화가 시행되고 품질차별화가 본격화 된다면 이 문제는 시장에서의 자율적 경쟁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석유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그간 석유유통 시장에서의 각종 위법행위 및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가 직접 시장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시정결의에도 불구하고 석유유통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난 3.2~4.17까지 최초로 정부가 직접 석유유통실태 조사를 실시, 부당가격할인, 상표표시제위반, 석유유통경로위반, 허위보고, 세금탈루혐의등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2개 대리점, 17개 주유소, 5개 석유일반판매소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공정거래위 및 국세청에 관련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다.

또한 하반기에도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8.11~8.23까지 호남정유, 쌍용정유와 일부대리점 및 주유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정유사의 직영대리점들은 경쟁사의 주유소 유치를 위해 기존 거래조건보다 약 2~3배의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과당경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관련 시·도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호유 및 쌍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감시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석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중·장기 석유비축 계획의 수립

정부는 그간 1,2차 석유비축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98년말까지 8개기지 91백만 배럴 규모로 저장

시설의 신·증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비축기지가 완공되더라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석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98년도 기준 정부비축 수준이 46일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2002년까지 정부 비축목표 60일분 달성에 필요한 63백만 배럴 규모의 추가시설을 확충하고 2005년까지 154백만 배럴을 비축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석유가 국민경제의 필수 에너지원이고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에 대비, 정부는 충분한 석유비축의 확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 석유사업법에 석유비축 부문을 별도의 장으로 하고 석유비축 대행업을 신설하는 등 그 내용을 보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관련 세제정비

금년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96.1.1부터 석유관련 세제를 현행 증가세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토록 하였으며, 현재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판매부과금(1당 20원)은 계속 유지하고 고급휘발유에 대한 별도 세액은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유가자유화 시행시 가격등락폭을 완충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어 오던 사항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등유에 15%의 교육세를 '96.7.1부터 2000년까지 부과키로 하였으며 교육세에도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올해 정부가 시행한 굵직굵직한 시책들을 중심으로 간략하나마 금년 한해를 정리해 보았다. 그간 국내 석유산업은 우리나라에 석유자원이 전

무하다는 점과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주요 원자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부의 규제와 보호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8번째 석유 대소비국이 되고 우리 석유산업이 세계 9위의 생산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제 석유 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우리 석유산업에도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금년에 「석유사업법」을 대폭 손질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국내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석유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가격과 품질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석유산업자유화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가격자유화 문제는 다른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적 생각을 가져보며, 내년 한해는 석유산업자유화 실시에 앞서 생산능력이 커지는 각 정유사들이 시장에서의 보다 유리한 고지점령을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석유업계가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되 업계간의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료」를 정립하고 이러한 료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물론 정부에게 맡겨진 주된 임무이지만 업계, 특히 석유산업의 건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유사들의 성숙된 자각과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정착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신년에도 우리 석유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이를 위한 우리모두의 공동노력을 기약해 본다. ♣